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「혈액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헌혈추진협회의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헌혈추진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(안 제2조~제2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제2조의3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2조) 제1항 중 “제4조제3항”을 “제4조의3제3항”으로 하며,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국가헌혈협회의회의 구성) ① 법 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헌혈추진 협의회(이하 “국가헌혈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국가헌혈협의회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.

③ 국가헌혈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부처에 소속된 3급 공무원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국무조정실
2. 기획재정부
3. 교육부
4. 국방부
5. 행정안전부

6. 그밖에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처

제2조의2(준용규정)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가헌혈협회의 운영,
수당, 운영세칙 등에 관한 내용은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5조의4까
지를 준용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4조의2제8항”을 “법 제4조의4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조(헌혈의 권장) ①</u>보건복지부 장관은 「혈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4조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제2조의3(헌혈의 권장) ①</u>----- ----- ----- <u>제4조의3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u>제2조(국가헌혈협회의 구성) ①</u> <u>법 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헌혈추진협의회(이하 “국가헌혈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② 국가헌혈협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.</u> <u>③ 국가헌혈협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부처에 소속된 3급 공무원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

<u><신 설></u> 제3조(헌혈자의 보호) 혈액원은 <u>법 제4조의2제8항</u>의 규정에 의 하여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 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 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1. <u>국무조정실</u> 2. <u>기획재정부</u> 3. <u>교육부</u> 4. <u>국방부</u> 5. <u>행정안전부</u> 6. <u>그밖에 헌혈기부문화 조성</u> <u>헌혈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</u> <u>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<u>부처</u> <u>제2조의2(준용규정) 이 영에서 규</u> <u>정하지 않은 국가헌혈협회의</u> <u>운영, 수당, 운영세칙 등에 관한</u> <u>내용은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</u> <u>제5조의4까지를 준용한다.</u> 제3조(헌혈자의 보호) ----- <u>법 제4조의4제8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